

【 12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8. 11. 2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정이유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 능(안 제2조)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나. 구 성(안 제3조)

-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됨.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양주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

다. 운 영(안 제4조)

- 회의 :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개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
- 회의공개, 의견진술, 위원회 출석 발언 등에 관한 사항
- 간사,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수당 지급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의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양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법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行政規制基本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制定 1997·8·22 法律第5368號
改正 1998·2·28 法律第5529號(政府組織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行政規制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하여 불필요한 行政規制를 廢止하고 비효율적인 行政規制의 新設을 抑制함으로써 社會·經濟活動의 自律과 創意를 촉진하여 國民의 삶의 질을 높이고 國家競爭力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行政規制”(이하 “規制”라 한다)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특정한 行政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것으로서 法令등 또는 條例·規則에 規定되는 사항을 말한다.
2. “法令등”이라 함은 法律·大統領令·總理令·部令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告示등을 말한다.
3. “既存規制”라 함은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 근거하여 規定된 規制와 이 법 施行후 이 법이 정한 節次에 따라 規定된 規制를 말한다.
4. “行政機關”이라 함은 法令등 또는 條例·規則에 의하여 行政權限을 가지는 機關과 同權限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을 말한다.
5. “規制影響分析”이라 함은 規制로 인하여 國民의 일상생활과 社會·經濟·行政등에 미치는 阻礙影響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豫測·分析함으로써 規制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規制의 구체적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適用範圍) ①規制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國會·法院·憲法裁判所·選舉管理委員會 및 監査院이 행하는 事務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作用一般 行政規制基本法

2. 刑事·行刑 및 保安處分에 관한 事務

3. 國家安全保障, 國防, 外交, 統一, 租稅등에 관한 事務중 이 法을 적용하기 곤란한 事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條例·規則에 規定된 規制의 登錄 및 公表, 規制의 新設 또는 強化에 대한 審査, 既存規制의 整備, 規制審査機構의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4條 (規制法定主義) ① 規制는 法律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用語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規定되어야 한다.

② 規制는 法律에 직접 規定하되, 規制의 세부적인 내용은 法律 또는 上位法令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大統領令·總理令·部令 또는 條例·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法令이 專門的·技術的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業務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告示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行政機關은 法律에 근거하지 아니한 規制로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課할 수 없다.

第5條 (規制의 원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하고, 規制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本質的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生命·保健과 環境등을 보호하기 위한 規制를 实效性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規制의 대상과 手段은 規制의 目的을 實現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設定되어야 한다.

第6條 (規制의 登錄 및 公表)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規制의 명칭·내용·근거·處理機關등을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規制事務目錄을 작성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職權으로 調査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規制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지체없이 이를 委員會에 登錄하게 하거나 당해 規制를 廢止하는 法令등의 整備計劃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의 登錄·公表의 방법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章 規制의 新設·強化에 대한 原則과 審査

第7條 (規制影響分析 및 自體審査)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規制를 新設 또는 強化(規制의 存續期限 延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規制影響分析을 하고 規制影響分析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規制의 新設 또는 強化의 필요성
2. 規制目的의 實現可能性
3. 規制의 代替手段의 존재 및 既存規制와의 重複여부
4. 規制의 施行에 따라 規制를 받는 集團 및 國民이 부담하여야 할 費用과 便益의 比較分析
5. 競爭制限의 要素의 포함여부
6. 規制 內容의 객관성과 명료성
7. 規制의 新設 또는 強化에 따른 行政機構·人力 및 豫算의 소요
8. 관련 民願事務의 具備書類·處理節次등의 걱정여부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影響分析의 결과를 기초로 規制의 대상·범위·방법등을 定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自體審査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專門家등의 의견을 충분히 收斂하여 審査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規制影響分析의 방법·節次와 規制影響分析書의 作成指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8條 (規制의 存續期限 명시)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規制를 新設 또는 強化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存續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規制에 대하여는 存續期限을 設定하여 당해 法令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規制의 存續期限은 規制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 서 設定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③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規制의 存續期限을 연장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당해 規制의 存續期限이 도래하기 1年전까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委員會는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作用一般 行政規制基本法

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規制의 存續期限을 設定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第9條 (意見收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規制를 新設 또는 強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聽會, 行政상 立法豫告등의 방법으로 行政機關·民間團體·利害關係人·研究機關·專門家등의 의견을 충분히 收斂하여야 한다.

第10條 (審査要請)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規制를 新設 또는 強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令案에 대하여는 法制處에 法令案 審査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하는 때에는 規制案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첨부하여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影響分析書
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審査意見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利害關係人등의 제출의견 요지

第11條 (豫備審査) ①委員會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당해 規制가 國民의 日常生活 및 社會·經濟活動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고려하여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아야 할 規制(이하 “重要規制”라 한다)인지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가 重要規制가 아니라고 決定한 規制는 委員會의 審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2條 (審査) ①委員會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重要規制라고 決定한 規制에 대하여는 審査要請을 받은 날부터 45日이내에 審査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審査期間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委員會의 결정으로 1次에 한하여 15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自體審査가 信賴할 수 있는 資料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節次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審査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10條第2項 各號의 添附書類중 補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補完을 요구할 수 있다.

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3條 (긴급한 規制의 新設·強化 審査)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긴급하게 規制를 新設 또는 強化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7條·第8條第3項·第9條 및 第10條의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要請된 規制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決定한 때에는 審査를 요청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規制의 新設 또는 強化의 타당성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委員會에 規制影響分析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要請된 規制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決定한 때에는 審査를 요청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第7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第14條 (개선권고) ①委員會는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規制의 新設 또는 強化를 撤回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5條 (再審査)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委員會의 審査結果에 異議가 있거나 委員會의 권고대로 措置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再審査를 요청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再審査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4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6條 (審査節次의 遵守)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委員會의 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規制를 新設 또는 強化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制處長에게 新設 또는 強化되는 規制를 포함하는 法令案의 審査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規制에 대한 委員會의 審査意見을 첨부하여야 한다. 法令案을 國務會議에 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3章 既存規制의 整備

第17條 (의견제출) ①누구든지 委員會에 既存規制의 廢止 또는 개선(이하 “整備”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既存規制의 審査) ①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既存規制의 整備에 관하여 審査할 수 있다.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委員會에서 審査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로부터 既存規制의 整備에 관한 사항을 移送받은 경우
3. 기타 委員會가 利害關係人·專門家등의 의견을 收斂한 결과 특정한 既存規制의 審査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은 第1項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9條 (既存規制의 自體整備)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매년 소관 既存規制에 대하여 利害關係人·專門家등의 의견을 收斂하여 整備가 필요한 規制를 선정하여 整備하여야 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結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20條 (規制整備綜合計劃의 수립) ①委員會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規制分野 또는 특정한 既存規制를 선정하여 既存規制의 整備指針을 작성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整備指針에 특정한 既存規制에 대한 整備의 期限을 정할 수 있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指針에 따라 당해 機關의 規制整備計劃을 수립하여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別 規制整備計劃을 綜合하여 政府의 規制整備綜合計劃을 수립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한다.

④規制整備綜合計劃의 수립·公表의 방법 및 節次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

한다.

第21條 (規制整備綜合計劃의 施行)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公表된 政府의 規制整備綜合計劃에 의하여 소관 既存規制를 整備하고 그 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0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가 整備의 期限을 정하여 통보한 特정한 既存規制에 대하여는 그 期限내에 整備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가 정한 期限내에 整備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委員會에 당해 既存規制의 整備計劃을 제출하고, 整備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22條 (組織整備등) ①委員會는 既存規制가 整備된 경우 政府의 組織 및 豫算을 관장하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既存規制의 整備에 따른 政府의 組織 또는 豫算의 合理化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4章 規制改革委員會

第23條 (設置) 政府의 規制政策을 審議·調整하고 規制의 審査·整備등에 관한 사항을 綜合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 소속하에 規制改革委員會를 둔다.

第24條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調整한다.

1. 規制政策의 基本方向과 規制制度의 研究·발전에 관한 사항
2. 規制의 新設·強化등에 대한 審査에 관한 사항
3. 既存規制의 審査, 規制整備綜合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한 사항
4. 規制의 登録·公表에 관한 사항
5. 規制改善에 관한 意見收斂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各級 行政機關의 規制改善實態에 대한 點檢·評價에 관한 사항
7. 기타 委員長이 委員會의 審議·調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25條 (구성등) ①委員會는 委員長 2人을 포함한 15人이상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國務總理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③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이 위촉하는 者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務員이 된다. 이 경우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全體委員의 過半數가 되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任用一般 行政規制基本法

어야 한다.

① 委員會의 幹事 1人을 두되, 公務員이 아닌 委員중에서 國務總理가 아닌 委員長이 지명하는 불가 된다.

②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國務總理가 지명한 委員의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6條 (議決定多數)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7條 (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人의 의사에 반하여 免職 또는 解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28條 (分科委員會) 委員會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分아 別로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29條 (專門委員等) 委員會의 業務에 관한 전문적인 調査·研究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專門委員과 필요한 調査要員을 둘 수 있다.

第30條 (調査 및 意見聽取等) ① 委員會는 第24條에 의한 機能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관계 行政機關에 대한 설명 또는 資料·書類 등의 제출 요구
2. 利害關係人·參考人 또는 관계 公務員의 출석 및 意見陳述 요구
3. 관계 行政機關등에 대한 實地調査

②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規制의 審査등과 관련하여 소속 公務員 또는 관계 專門家로 하여금 委員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31條 (委員會의 事務處理等) ① 委員會의 事務處理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事務機構를 둔다.

② 委員會의 전문적인 審査事項을 지원하기 위하여 專門研究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第3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專門委員 및 調査要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33條 (組織 및 運營) 이 법에 정한 것외에 委員會의 組織·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補則

第34條 (規制改善 點檢·評價) ①委員會는 효과적인 規制의 개선을 위하여 各級 行政機關의 規制運營實態와 개선사항을 확인·點檢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點檢 결과를 評價하여 國務會議과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點檢 및 評價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專門機關등에 輿論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④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點檢 및 評價 결과 規制改善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不良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大統領에게 이의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建議할 수 있다.

第35條 (規制改革白書) 委員會는 매년 政府의 主要 規制改革 推進狀況에 관한 白書を 發刊하여 國民에게 公表하여야 한다.

第36條 (行政支援등) 行政自治部長官은 規制關聯制度를 研究하고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第37條 (公務員의 責任등) ①公務員이 規制改善業務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公務員의 행위에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規制改善業務 추진에 현저한 功勞가 있는 公務員에 대하여는 褒賞, 人事상 優待措置등을 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1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1998·2·24 大統領령제15681호 부칙에 의하여 1998·3·1부터 시행]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法律 第4735號 行政規制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法 施行당시 既存規制의 自體整備에 대한 特例)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施行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月 31日까지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既存規制의 自體整備에 갈음하여 이 법 施行당시 모든 소관 規制에 대한 年次別整備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第4編 行政一般 第2章 行政作用一般 行政規制基本法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整備計劃 및 그 施行 結果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條 (訓令·告示등의 再檢討) ①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이 法 施行당시 施行중인 訓令·例規·指針·告示등에 規定된 規制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再檢討하여야 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討 結果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근거하지 아니한 訓令·例規·指針·告示등에 規定된 規制는 이를 지체없이 廢止하거나 關係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다른 法令의 規定”을 “다른 法令(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規定”으로 한다.

第42條중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62條第3號중 “制定 또는 改正”을 “改正”으로 하고, 同條第5號중 “行政規制”를 “企業活動에 관한 行政規制”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調査·審査事項중 行政規制에 관한 法令·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規制改革委員會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할 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規制改革委員會가 審査하기로 決定한 사항을 지체없이 關聯資料와 함께 規制改革委員會에 移送하여야 한다.

附 則 <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극·본부장(담당관, 실·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정이유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대신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 능(안 제2조)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나. 구 성(안 제3조)

-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됨.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양주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

다. 운 영(안 제4조)

- 회의 :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개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
- 회의공개, 의견진술, 위원회 출석 발언 등에 관한 사항
- 간사,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수당 지급

제정조례(안) : “별첨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는 이법(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예산 수반사항

- 회의참석 수당 : 50,000원 × 8인 × 3회 = 1,200,000원